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5.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85호로 2025년 8월 14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5년간 영등포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66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총 90명(사망자 10명, 부상자 80명), 추산 재산피해액은 약 54억 9,616만원에 육박하며, 매년 수백 건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영등포구 화재발생 현황(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분	화재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1,366	90	10	80	5,496,156
2024년	336	10	0	10	1,403,031
2023년	348	35	2	33	1,681,193
2022년	249	26	5	21	823,438
2021년	208	8	0	8	913,698
2020년	225	11	3	8	674,796

- 한편, 화재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사회재난지원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사회재난지원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¹⁾의 피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수준의 피해가 전제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화재피해가 발생하여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위험이 있어도 대규모의 화재 피해가 아니면 구민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2025. 8.)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2)9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한적인 적용 범위를 보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정서·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화재피해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 안 제2호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을 ▲화재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1)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2)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9개구)

주민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화재피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지원대상 및 제외)는 ▲보험 가입자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고의적 화재 등 불필요한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한편, 긴급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는 ▲심리상담 ▲임시주거 ▲폐기물 처리비 ▲긴급급식 ▲응급구호세트 등 화재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내용으로 규정함.
 - 또한 안 별표에서 지원사항·기준 및 처리부서를 명시하였는데, 지원사항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지원금 환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 지원 대상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과 조례와 달리, “화재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거주가 힘들거나 안전피해 우려가 있는 구민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 ▲심리회복 ▲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세트 ▲긴급급식 등 다양한 생활재건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화재피해 구민이 보다 원활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